

2019년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 10.(화요일), 11: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04건(안전번호 제2019-110775호~11197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19-110775호는 민원인이 작성한 칼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 전재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자가 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안전번호 제2019-110776호~110781호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안전번호 제2019-111978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인 자신이 입점한 쇼핑몰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다른 쇼핑몰에서 민원인이 촬영한 제품사진등을 이용한 사안으로, 민원인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품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민원 철회를 희망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111979호는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을 네이버 쇼핑물
입점 판매자가 무단 이용한 사안으로, 민원인의 요청을 받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을 삭제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90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85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5쪽, 6쪽의 '스즈키 코노미', '월피스 카터' 등 실연자 명이 드러난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구함
- B 위원 : 공개하여도 무방할 정보로 판단됨
- A 위원 : 7쪽 하단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요청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110775호~11197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504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0775호는 저작자인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민원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칼럼을 무단 전재한 사안임
(커뮤니티 사이트의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이 작성한 글 전체를 다른 수정이나 증감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두었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와하~ 글 정리 잘 되어 있네요.'라고 기재하며 민원인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 즉 원 글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하였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1077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복제·전송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원 게시글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상업적인 목적 없이 복제·전송자가 이 글을 읽고 공감을 했고, 본인의 입장과 잘 맞는 글이어서 복제·전송한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저작자인 민원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시정권고 하여야 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은 칼럼리스트이며 출판 도서의 저자이기도 함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잡지 등 언론매체와 기고문 게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원치 않는 성격의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무단 이용되

고 있는 경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무단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을 전화로 청취한 바 있음

- A 위원 : 또한 권리제한을 허용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이, 권리자의 글을 그대로 복제·전송하였기 때문에 권리자가 시정권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그렇다면 권리자가 직접 민원을 신고하여 시정권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수정이나 증감 없이 그대로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077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10776호~11178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와 'Windows'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cracking)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

으로는 일부 심의대상 게시물이 크래킹(cracking)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license key)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한편 Office와 Window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홈페이지에서 'Office 365' 체험용 프로그램을 1개월 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추후 라이선스 인증을 요구하는 'Windows 10'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0779호와 제2019-110780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 수 없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0778호나 제2019-110781호는 보호원이 조사한 자료만 보더라도 시디키나 크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외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dead copy)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A 위원 :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0776호~1107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

에게 안전번호 제2019-111978호~11197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1978호는 견과류, 차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은 자신이 위 이미지의 권리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원본 파일을 제출하였고, 원본 파일은 민원인 회사 소속 디자인팀 직원이 사진 촬영, 보정 및 편집한 것임
안전번호 제2019-111979호는 권리자인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민원인이 촬영한 제품 이미지를 네이버쇼핑 입점 판매자가 동일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민원인은 자신이 위 이미지의 권리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원본 파일을 제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사진들은 단지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그 피사체만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기타 촬영 방법에 있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나아가 촬영된 사진에 색 보정을 하고, 제품설명을 덧붙여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개성이 표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한편 안전번호 제2019-111978호는 민원인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인 ○○○에 입점하면서 제품사진 등 본 건 이미지를 게시하였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쇼핑몰인 '▲▲'는 ○○○과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음
민원인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모르고 본 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품거래 구조를 이해한 후 민원 철회를 희망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1979

호는 민원인이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심의 시점 현재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진이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음

- A 위원 :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 이용되고 있는 제품사진 등에 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나 오픈마켓 쇼핑몰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민원인이 이미 민원 철회를 희망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미 삭제 조치를 하였으므로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 이의없이 부결하는 것에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1978호~111979호는 게시물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10782호~11197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10782호~11197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0840호는 가수 'ITZY (있지)'가 부른 '(음악)ICY' 고음질 음원파일(flac)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음원은 관련 저작권자가 다수인데 작사가로 J.Y. Park 'The Asiansoul', 페노메코 (PENOMEKO)가 있고, 작곡가로 J.Y. Park 'The Asiansoul', Cazzi Opeia, Ellen Berg Tollbom, Daniel Caesar, Ludwig Lindell, Ashley Alisha(Joombas), Cameron Neilson, Lauren Dyson, 편곡자로 J.Y. Park 'The Asiansoul', 이해솔이 있음

안전번호 제2019-110909호는 밴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이며, '(출판)달빛조각사' 등 소설 저작물 4개를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밴드는 밴드명 자체가 '■■■■'로,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19-110947호 역시 '■■■■' 밴드에서 제공되고 있음
알에스미디어에서 출판한 '서울역 네크로맨서' 외에도 소설 텍스트파일 4개를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19-111415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로 2019년도에 개봉한 국내 최신영화 '악질경찰 (2019)'임

- B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0782호~11197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1978호~111979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19-110775호~111977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17.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